

품목별 현장검역 수량(제18조제2항 관련)

1. 재식용

식물의 종류	검역 수량
가. 감귤류·사과·배·호도·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	전량
나. 아보카도·양다래·파인애플·망고 등의 열대·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	1) 주수(株數)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,000주 미만: 50% 이상(최대 500주 미만) 1,000주~2,000주 미만: 500주 2,000주~5,000주 미만: 750주 5,000주 이상: 1,000주 2)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(삽수·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 10kg 미만: 50% 이상(최대 5kg 미만) 10kg~20kg 미만: 5kg 20kg~50kg 미만: 7.5kg 50kg 이상: 10kg
다. 카네이션·국화·장미·선인장·소철·야자·라일락·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, 소나무·낙엽송 등의 삼림식물, 제1호·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	1)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,000주 미만: 30% 이상(최대 600주 미만) 2,000주~1만주 미만: 600주 1만주~5만주 미만: 900주 5만주 이상: 1,200주 2)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(삽수·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 200kg 미만: 30% 이상(최대 60kg 미만) 200kg~1톤 미만: 60kg 1톤~5톤 미만: 90kg 5톤 이상: 120kg
라.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	1톤 미만: 50% 이상(최대 500kg 미만) 1톤~20톤 미만 : 500kg

<p>마. 백합·튤립·수선·히아신스·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(알뿌리류)</p>	<p>20톤 이상: 750kg</p> <p>1)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</p> <p>5,000개 미만: 20% 이상(최대 1,000개 미만)</p> <p>5,000개 ~ 5만개 미만: 1,000개</p> <p>5만개 ~ 10만개 미만: 1,250개</p> <p>10만개 이상: 1,500개</p> <p>2)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[자구(子球, 새끼 알뿌리)만 해당한다]</p> <p>100kg 미만: 20% 이상(최대 20kg 미만)</p> <p>0.1톤 ~ 1톤 미만: 20kg</p> <p>1톤 ~ 20톤: 25kg</p> <p>20톤 이상: 30kg</p>
<p>바. 마늘·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</p>	<p>20톤 미만: 5% 이상(최대 1,000kg 미만)</p> <p>20톤 ~ 100톤 미만: 1,000kg</p> <p>100톤 ~ 500톤 미만: 1,200kg</p> <p>500톤 이상: 1,400kg</p>
<p>사. 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·조식배양 식물과 그 부분</p>	<p>500개 미만: 3% 이상(최대 15개 미만)</p> <p>500개 ~ 1,000개 미만: 15개</p> <p>1,000개 ~ 5,000개 미만: 30개</p> <p>5,000개 이상: 45개</p>
<p>아. 벼·보리·옥수수·조·수수·콩·팥·완두콩 등 곡류 종자</p>	<p>0.1톤 미만: 20% 이상(최대 20kg 미만)</p> <p>0.1톤 ~ 5톤 미만: 20kg</p> <p>5톤 ~ 50톤 미만: 30kg</p> <p>50톤 이상: 40kg</p>
<p>자. 곡류 종자 외의 채소·화초·수목류·목초류 등의 종자</p>	<p>0.1톤 미만: 10% 이상(최대 10kg 미만)</p> <p>0.1톤 ~ 5톤 미만: 10kg</p> <p>5톤 ~ 50톤 미만: 15kg</p> <p>50톤 이상: 20kg</p>

2. 비재식용

식물의 종류	검역 수량
<p>가.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(折枝)</p>	<p>3,000개 미만: 20% 이상(최대 600개 미만)</p> <p>3,000개 ~ 15,000개 미만: 600개</p>

<p>나. 밀·콩·녹두·동부·땅콩·아주까리·아마인·코푸라·벼·보리·수수·조·옥수수 등으로서 유료·양조·제분·비료·사료·식량에 쓰이는 식물</p>	<p>15,000개 ~ 3만개 미만: 900개 3만개 이상: 1,200개 20톤 미만: 0.5% 이상(최대 100kg 미만) 20톤 ~ 500톤 미만: 100kg 500톤 ~ 2,000톤 미만: 150kg 2,000톤 ~ 1만톤 미만: 200kg 1만톤 ~ 2만톤 미만: 250kg 2만톤 이상: 300kg</p>
<p>다. 아마·삼·아바카 등의 조섬유, 짚·가마니·새끼 등의 짚제품, 후추·커피원두·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, 한약재, 건조과실, 건조채소, 냉동과실, 냉동채소,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</p>	<p>20톤 미만: 0.5% 이상(최대 100kg 미만) 20톤 ~ 100톤 미만: 100kg 100톤 ~ 500톤 미만: 150kg 500톤 이상: 200kg</p>
<p>라. 생과실, 생채소의 열매·잎·뿌리, 감자, 고구마, 마</p>	<p>20톤 미만: 2% 이상(최대 400kg 미만) 20톤 ~ 100톤 미만: 400kg 100톤 ~ 500톤 미만: 500kg 500톤 이상: 600kg</p>
<p>마. 목재·죽재</p>	<p>종류별로 2%</p>
<p>바. 우드칩·톱밥</p>	<p>20톤 미만: 0.5% 이상(최대 100kg 미만) 20톤 ~ 500톤 미만: 100kg 500톤 ~ 2,000톤 미만: 150kg 2,000톤 ~ 1만톤 미만: 200kg 1만톤 ~ 2만톤 미만: 250kg 2만톤 이상: 300kg</p>
<p>사.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되는 금지품</p>	<p>전량</p>
<p>아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</p>	<p>종류별로 2%</p>

※ 비고

1. 위 기준에 없는 식물은 유사한 식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.
2. 전량을 검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.
3. 검역할 수량에 대한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물등의 상

태로 보아 병해충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.

4. 수출국이나 도착지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식물 및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역할 수량을 줄일 수 있다.
5. 포대·상자 등에 포장된 식물 중 검역본부장이 정한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은 다음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른 포장에서 위 표의 검역할 수량을 추출하여 검역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한다.
 - 가. 1개 포장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수를 2분의 1로 감하여 추출할 수 있다.
 - 나.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해당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역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.

검역표본의 추출기준

포장의 수	표본추출 포장수
1 ~ 6	전체
7 ~ 14	6
15 ~ 24	7
25 ~ 34	8
35 ~ 44	9
45 ~ 54	10
55 ~ 64	11
65 ~ 74	12
75 ~ 84	13
85 ~ 94	14
95 ~ 104	15
105 ~ 114	16
115 ~ 124	17
125 ~ 134	18
135 ~ 144	19
145 ~ 154	20
155 ~ 164	21
165 ~ 174	22
175 ~ 184	23
185 ~ 194	24
195 ~ 204	25
205 ~ 214	26
215 ~ 224	27

225 ~ 234	28
235 ~ 244	29
245 이상	30 이상